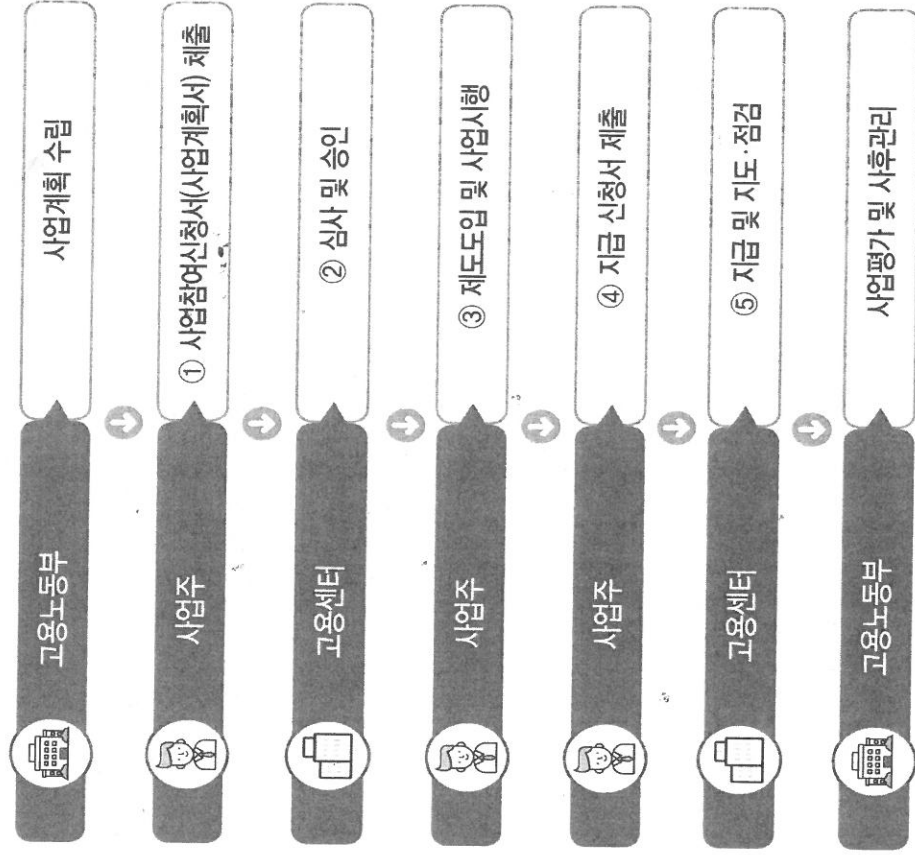


# 1 사업개요

# 2

## 지원 절차

- ☑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권모형】 1 → 2 → 3 → 4 → 5 / 【요건형】 4 → 5

# 3

## 지원 유형

- (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명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권척서
      -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종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 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 (2)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유형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금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li> <li>▶ <b>&lt;전환된 근로자 1인당&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li> <li>*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증가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간접노무비) 월 30만원</li> </ul> </li> <li>•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li> <li>▶ <b>&lt;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월당 활용일수에 따라 월당 15~30만원</li> </ul> </li> <li>•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li> <li>▶ <b>&lt;인프라구축 기업당&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구축비)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li> </ul> </li> </ul>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li> <li>▶ <b>&lt;단축 근로자 1인당&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감소에 보전금) 월 20만원</li> <li>*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에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li> </ul> </li> </ul>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li> <li>•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li> <li>▶ <b>&lt;해당 근로자 1인당&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단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원</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li> </ul> </li> </ul>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4 지원 제외 근로자

##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 정규직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정규직전환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총경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①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정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파견 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만 대상이 됨

-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③ 고용보험 가입

### 지원수준 및 한도

- ① 지원수준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정액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간접노무비30만원)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정액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간접노무비30만원)
-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만 지급)

### ② 지원 인원 한도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경우는 지원 한도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서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함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함
- ※ 사업 참여 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사례) 한도인원 30명인 경우 1차 15명, 2차 10명, 3차 5명 분할은 가능

### 지급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 2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4대 보형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간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출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